

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29(금)
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0. 10. 19

나. 발 의 자 : 강병수 의원외 35인

다. 회부일자 : 2010. 10. 19

라. 상정일자 : 2010. 10. 20(제18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
- 제안설명 : 강병수 의원
- 검토보고 : 김중진 전문위원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인천시의 불건전한 재정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시 지방재정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함.
- 또한, 현재 주요 지방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책임있는 경영의식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함.

- 이에 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부채 및 상환계획,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의 불안감 해소 등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.

나. 주요내용
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6개월
※단,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
- 구성인원 : 9인 이내
- 활동범위
 - 지방채 분석, 중장기 재정대책 검토 등 [기획행정위]
 - 인천도시개발공사, 인천메트로, 인천교통공사 관련 단위사업 등 [건설교통위]
 - 인천관광공사 관련 단위사업 등 [문화복지위]
 - 경제자유구역청 단위사업(외자유치 중점) 등 [산업위]
 - SPC 사업 등 재정분야 단위사업 전반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인천시의 불건전한 재정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정확한 부채규모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의 불안감 해소 등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해당사항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전원기, 이재병, 조영홍, 김정현, 노현경, 신동수, 신현환,
안영수, 이도형, 정수영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10명)

7.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사항

- 해당사항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부. 끝

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1. 주 문

-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벌어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(채무지급유예) 선언의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시 불건전한 재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『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인천시의 불건전한 재정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정확한 부채규모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시 지방재정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함.
- 또한, 현재 주요 지방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책임 있는 경영의식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함.
- 이에 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부채 및 상환계획,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의 불안감 해소 등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.

3.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6개월
 - ※단,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
- 구성인원 : 9인 이내
- 활동범위
 - 지방채 분석, 중장기 재정대책 검토 등 **[기획행정위]**
 - 인천도시개발공사, 인천매트로, 인천교통공사 관련 단위사업 등 **[건설교통위]**
 - 인천관광공사 관련 단위사업 등 **[문화복지위]**
 - 경제자유구역청 단위사업(외자유치 중점) 등 **[산업위]**
 - SPC 사업 등 재정분야 단위사업 전반 등

4. 세부활동계획

- 특별위원회에서 수립·의결

5.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